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00호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농번기 등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켜 창원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과 마을대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라. 마을공동급식을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마을공동급식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바. 마을공동급식 실행에 대한 완료 보고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u>2023년 9월 4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

발의연월일: 2023. 8. 29.

발 의 의 원: 전홍표 • 권성현 • 김경희 • 김묘정 • 김상현

김우진・문순규・박강우・박해정・백승규

서영권・심영석・오은옥・이우완・이원주

정순욱 · 최은하 · 한상석 · 한은정 의원(19명)

찬 성 의 원: 황점복 의원(1명)

1. 제안이유

농번기 등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켜 창원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과 마을대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마을공동급식을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마을공동급식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바. 마을공동급식 실행에 대한 완료 보고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 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 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15명 이상일 것(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 2. 급식시설을 구비할 것
- 제6조(지원 기간) 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4조 따라 마을공동급식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 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완료 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마을대표는 마을공동 급식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을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 색상이 어	누운 단은 2	<u> </u>	않습니다.	•							
접수번호				7	접수일지	;					
신청인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호:	휴대전화번호:			፬:		
(마을대표)	주소:										
마을현황	마을명	거주현황		마을공동급식 참여인원							
		농가(호)	인원	인원 계(명) 시설·f		원예	과수	수도작	축	산	기타
 ※ 참여비율: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급식장소: 위 치()		
급식계획	조리원 성명: 연락처()			
 소요		계	인건비				부식 구입비		도시락 등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마을대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수수료 2.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실 .	사		> 선	정	→	 결경	정 통지
 신청인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ō	당원시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1. 사 업 명 :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 000마을회, 000부녀회

2. 보조 사업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

○ 대 표 명:		[(H)	_	_]		
3. 사업기간							
○ 공동급식 기간	<u></u> ት: 20	년 ·	월 ~	월			
○ 공동급식 일수	: 약	일					
4. 사 업 자							
○ 마을대표 성명	!:		전화번	호 :			
5. 조리원 인적사형	하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계 좌 번 호	
6. 사업비 소요내약	격						
구 분					세 부 내 용		
합 계							
인 건 비							
부 식 비							
위생장비							
도시락 및 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자 명단

[마을명:]

연번	주 소	성 명	연령	농업인 여부
계		○○명		

참고

관계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 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마. 생태계의 보전
 -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소비자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 ·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